

# 2022년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5. 4.(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6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42건(안건번호 제2022-31451호~3242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31451호(순번 1번)는 교육 회사가 중등 강의 사이트에 직접 제작한 강의 홍보 영상을 게시하면서 영화 영상의 일부를 이용한 건으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31452호~31454호(순번 2번~7번)는 ☒☒☒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영화, 방송을 무단으로 전송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다만, 안건번호 제2022-31455호(순번 5번)는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23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2-6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2쪽 내지 12쪽의 OSP명, 게시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OSP명, 게시물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24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익명으로 신고한 건임. 교육 회사가 운영하는 중등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 홍보 영상을 제공하면서 국내 영화의 일부를 이용 중인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위 웹사이트의 “○○ ○○ ○○” 게시판에 게시된 ▼▼ 분량의 “㉹㉹ ㉹㉹㉹㉹ ㉹㉹ ㉹㉹㉹㉹㉹ ㉹㉹㉹㉹” 강의(이하 ‘본건 영상’이라 함)를 안내 및 제공하는 웹페이지임. 게시자는 사이트 관리자,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추정됨.

본건 영상은 해당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본 강의의 ‘맛보기’ 영상으

로, 전체 ◆◆◆ 분량의 본 강의 중 초반부 ⅢⅢⅢ을 제공하고 있음. 이 중 ◆◆◆부터 △△ △△△까지 총 ⅢⅢⅢ에 걸쳐 국내 영화 '□□□'의 영상이 일부 사용되었음.

본건 영상에서 이용 중인 부분은 영화 '♣♣♣'의 배급사인 '★★★★★★★★★★★★'가 ⅢⅢⅢ 공식 채널에서 예고편으로 공개한 영상들을 재편집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회사는 교육 회사로서 영화, 방송 자료를 활용한 수행평가 강의를 다수 제공하는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만약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없다고 하여도, 본건 영상은 권리자가 홍보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영상을 활용하여 강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사안과 동일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의 영화 본편 중 약 ●●●가량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권리자가 홍보 목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만을 활용하고 있는 바, 본건 영상을 통하여 본편의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등 합법 시장의 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려움. 따라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임.

더불어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영상을 포함하는 강의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로, 비록 해당 웹페이지의 본질이 본건 영상이 포함된 강의의 제공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강사 소개, 강좌 소개, 수강 후기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여타 권리의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C 위원: 한정된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물의 빠른 확산을 막고자 하는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임.

앞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 A,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4번은 민원인이 익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3개 게시물임.

순번 5번~7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통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에서 방송 불법복제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3개 게시물임.

(순번 2번 채증 자료 및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를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 하고 있음.

(순번 5번 채증 자료 및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5번의 경우 채증 자료에는 현존했던 게시물이 심의일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순번 7번 채증 자료 및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채증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화 분량을 제공 중인 것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비공개 처리되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7번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여전히 불법복제물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는 바 전체공개 설정된 불법복제물과 다르게 보기 어려움.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5번의 경우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로 족할 것으로 생각됨.
- A,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4번, 6번~7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하고, 순번 5번은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8번~97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23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사랑의 바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번은 블로그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04. 07. 27.에 발매한 국내 가요로써,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방송 '소년심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1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소년심판'을 99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방송한 편당 전체 분량인 약 62분씩 총 10편을 mp4 형태의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 중임. 해당 저작물은 2022. 02. 25.부터 방영을 시작한 국내 웹드라마로써, NETFLIX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만화 '원피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17번은 블로그에서 만화저작물을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1997. 7. 22.에 연재를 시작한 일본 만화로써, 웹툰 플랫폼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8번~972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97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31451호(순번 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31452호~31454호, 제2022-31456호~31457호(순번 2번~4번, 6번~7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31455호(순번 5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31458호~32422호(순번 8번~97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1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